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별표 9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방법·적용·해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공정심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를 제조공정 등의 심사를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정밀검사"라 함은 소방용품에 대한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고 대기중이거나 생산완료된 소방용품 또는 유통중인 소방용품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 "로트"라 함은 동일공정에서 생산된 제품단위를 말한다.

제2장 품질제품검사의 절차

제3조(품질제품검사의 신청) ① 규칙 제22조제6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3.>

1. 일반현황

2. 대표자서약서
3. 주요인력현황
4. 시험시설 및 기기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5. 제조설비 보유현황(해당소방용품에 한함)
6. 품질매뉴얼
7. 자체검사 운영절차서
8. 합격표서관리절차서
9.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 실적(품질제품검사 (Ⅱ)와 (Ⅲ)에 한함)
10.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제1항제10호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3.>

③ 품질제품검사는 별표 1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의 (Ⅰ), (Ⅱ) 또는 (Ⅲ)를 선택하고 소방용품의 품목단위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완제품으로 수입되는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6. 4. 13.>

④ 최초의 품질제품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규칙 제23조에 따라 품질제품검사 적용이 해지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일 또는 해지일부터 6개월간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이 경우 별표 1의 품목단위가 다른 품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검사일정통보 등) ① 검사주기에 따른 품질제품검사일은 최초품질제품검사 합격통보일을 기준일로 설정하고 품질제품검사는 기준일 전후로 실시한다.

② 기술원 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품질제품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정 등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일정 등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일 3일 전까지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조정을 요청 할 수 있다.

제5조(검사주기 조정) ①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자는 2이상의 품목단위에 대한 검사주기를 동일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주기의 조정을 요청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요청일을 기준하여 가장 빨리 도래하는 품목단위에 대한 기준일로 일치시켜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정밀검사) ① 정밀검사는 별표 1에 구분한 품목단위별로 대표형식에 대하여 검사주기마다 실시한다. 이 경우 시료는 규칙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을 출고대기 중인 제품에서 발취하거나 유통 중인 제품 중에서 수거한다.<개정 20

15. 1. 15.>

② 제1항의 대표형식은 검사주기에 생산된 제조업체의 보유형식 중 K S규격에서 정한 샘플링방법에 의하여 정한다.

③ 제1항의 정밀검사항목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서 정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 1. 15.>

④ 정밀검사는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의 시험설비 및 기기 등을 사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의 운반 또는 보관취급이 어렵거나 일부 시험을 다른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한 품목단위의 모든 형식 제품에 대하여 가장 최근에 실시한 생산제품검사(부정기시험을 포함한다)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최초의 정밀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공정심사) ① 공정심사는 신청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의 신청내용에 해당되는 심사항목을 심사한다.

② 공정심사는 품질관리체계의 운영자료와 관리기록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의 면담 및 현장실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③ 기술원 및 전문기관은 공정심사분야가 특수하거나 전문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결과판정 등) ① 제6조에 따른 정밀검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개정 2026. 4. 13.>

1. 중결점 이상의 결함이 없는 경우
2. 서로 다른 결함 또는 동일한 결함이 2개 이하인 경우로서 제조자가 10일 이내에 재발방지 및 개선대책 등이 포함된 조치결과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② 제7조에 따른 공정심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한다.

1. 별표 2의 심사종류 분류항에 "중"으로 표시된 항목이 1개 이상 부적합한 때에는 나머지 항목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2. 품질제품검사(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1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3. 품질제품검사(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5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4. 품질제품검사(III)의 공정심사는 별표 2 제2호의 전체 심사항목 중 부적합 항목이 3개 이하인 경우로서 부적합 내용을 1회 20일 이내에

보완 완료한 경우에는 보완결과를 확인하고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검사 및 공정심사에 모두 적합한 때에는 품질제품검사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를 신청하여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종전에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품목단위는 새로 발급받은 적용승인서의 품질제품검사 구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2026. 4. 13.>

④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품질제품검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품질제품검사의 적용 등) ① 법 제47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의 정지를 받은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품질제품검사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으로부터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2조제6항에 의한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신청서와 품질관리체계 운영자료 등을 기술원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품질제품검사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이 기준에 따라 품질제품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0조(세부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5., 2018. 12. 14., 2021. 9. 30., 2026. 4. 1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질제품검사에 관한 적용례)

-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Ⅰ)"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한다.
- ②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규정인 별표 1 제1호에 따라 "품질제품검사(Ⅱ)"를 적용받고 있는 소방용품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별표 1 제1호에 따른 "품질제품검사(Ⅲ)"를 적용한다.

제3조(품질제품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은 제2조에

다른 품질제품검사 적용증인서를 재발급 한다.

[별표 1]

소방용품 품목단위 구분(제3조제3항 관련)

1. 품질제품검사의 구분<개정 2026.4.13.>

품질제품검사 구분	검사주기	
	형식승인대상소방용품	성능인증대상소방용품
품질제품검사 (Ⅰ)	1월 1회	1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Ⅱ)	3월 1회	6월 1회
품질제품검사 (Ⅲ)	6월 1회	12월 1회

※ 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상기의 검사주기 기간을 2배로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칙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정하는 수수료할인율은 확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주기 확대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의 품목단위에 포함되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5.1.15.>

2. 소방용품의 품목단위

가.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개정 2015.1.15., 2026.4.13.>

단위	품 목			
1	소화기구	소화기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		캐비닛형자동소화장치		
4		자동소화장치	가. 가스자동소화장치	
5			나. 분말자동소화장치	
6			다.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7		자동확산소화기		
8		에어로졸식 소화용구		
9		투척용소화용구		
10		소공간용 소화용구		
11	소화약제			
12	방염제			
13	피난기구	피난사다리		
14		구조대		
15		완강기	가. 완강기(간이완강기를 포함한다)	
16			나. 완강기지지대	
17		유도등		
18		비상조명등		

19	경보기구	누전경보기	
20		가스누설경보기	
21		발신기	
22		수신기	
23		중계기	
24		감지기	가. 열감지기
25			나. 연감지기
26			다. 불꽃감지기
27		경종	
28	자동소화	유수제어밸브	
29	설비의	스프링클러헤드	
30		기동용수압개폐장치	
31	기기	가스관선택밸브	
32	그 밖의 소방용품	소방호스	
33		관창	
34		<삭 제>	
35		공기호흡기	
36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37		소화전	가. 옥내소화전방수구
38			나. 옥외소화전

나.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개정 2021.9.30., 2026.4.13.>

단위	품 목	
1	축광표지	
2	예비전원	
3	비상콘센트설비	
4	표시등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7	소방용전선	
8	탐지부	
9	지시압력계	
10	<삭 제>	
11	공기안전매트	
12	소방용밸브	가. 개폐표시형밸브
13		나. 릴리프밸브
14		다. 푸트밸브

15	소방용스트레이너	
16	소방용압력스위치	
17	소방용합성수지배관	
18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19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20	소화설비용 헤드	가. 물분무헤드
21		나. 분말헤드
22		다. 포헤드
23		라. 살수헤드
24	방수구	
25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	
26	소방용흡수관	

비고 : 규칙 별표 7 제22호에 의하여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
 용품의 품목단위 구분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용품 단위로
 한다.<개정 2015.1.15., 2021.9.30.>

[별표 2]

소방용품 공정심사 기준

1. 품질제품검사(I)<신설 2026. 4. 13.>

구 분		심사 종류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 고
[1] 품질경영관리	가) 품질경영시스템	(중)	1.1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문서(매뉴 등)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1.2 품질문서는 규정된 배포대상자에게 항상 최신본으로 배포 및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	1.3 품질제품검사 신청 업체에서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중)	1.4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품목단위별 생산제품검사의 최근 1년간 불합격율(검사로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3.0 % 이하이어야 한다.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은 종전의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일로 한다.			
	나) 기록 및 문서관리		1.5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규격 등 모든 기술문서는 최신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1.6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기록(자체검사관련서류, 합격표시 관련서류 등)은 3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관리대장에 의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구매 및 생산	가) 외주업체 관리	(중)	2.1 품목단위의 제품에는 수입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나) 제조설비 및 장비	(중)	2.2 신청품목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및 장비를 보유하고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 생산	(중)	2.3 생산공정 합리화를 위한 최신본의 공정관리 규정(작업지침서, 작업표준, 작업지도서 등) 및 공정별 합격 판정기준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2.4 생산설비, 생산품 및 불량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명확히 하고 정상제품과 불량제품을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중)	2.5 완성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합격증지 불출현황 또는 철인사용 현황 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3]	자 체 검 사 체 계	가) 검사방 법 및 합격수 준관리	(중)	3.1 샘플링·검사방법 및 합격수준 등을 규정 화하고 자체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시험· 검사결과 등 증거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중) (*)	3.2 합격제품의 출고를 승인하는 책임자를 선 정하여 승인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을 출고하여 야 한다.			
				3.3 시험·검사제품의 취급·운반·보관 및 부 적합·불량제품에 대하여 원인파악 등 처리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중)	3.4 시험·검사자를 지정하여 생산로트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 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중)	3.5 형식별로 년 1회 이상 관련 기준의 시험방 법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기록 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6 시험실별 환경유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조 건을 규정화 하고 시험실 환경을 기록관리하여 야 한다.			
	나) 검사설 비 및 장비		(중)	3.7 교정 등을 통해 측정의 유효성과 지속적인 장비의 가동·유지·관리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3.8 주요 시험·검사장비의 사용매뉴얼 등 사용 기준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	3.9 기기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기기의 이력을 관리 하여야 한다.			
[4]	품 질 개 선 활 동	가) 시정 및 예 방조치		4.1 생산공정 및 검사결과에 불량원인 개선을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5]	합 격 표 시 등 의 관	가) 합격표 시	(중)	5.1 합격표시의 관리(수령, 불출, 사용, 보관 및 반납, 오사용, 훼손, 도난 등)에 관련된 사항 을 규정화하고, 대표자가 지정된 직원에 의 해 관련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 러한 기록에서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확인되 어야 한다.			
				5.2 합격표시 관리자는 합격표시 부착작업 공 정에 입회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합격표시 관리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	5.3 합격표시는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리			2중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외의 불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나) 품질안전성	(중)	5.4 생산중 제품의 결함 또는 A/S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는 기록으로 보존되어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심사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는 부적합 처리됨.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신청인이 다른 품목단위의 소방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

2. 품질제품검사(Ⅱ), 품질제품검사(Ⅲ)<개정 2026. 4. 13.>

구 분		심사 종류	심 사 기 준	평 가 결 과		
				적합	부적합	비 고
[1] 품질경영관리	가) 품질경영시스템	공통 (*)	1.1 대표자의 품질경영 의지를 나타내는 “품질방침” 및 년도별 세부 실행계획인 “품질목표”를 수립하고 작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통 (중)	1.2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문서(매뉴얼, 절차서 및 작업표준 또는 작업지침서 등)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공통	1.3 품질경영시스템의 유효성 보장 및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품질문서 제·개정 등 개선을 실시하고 책임자가 승인한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1.4 품질문서는 규정된 배포대상자에게 항상 최신본으로 배포 및 관리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1.5 인력 및 제조설비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문서화된 변경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	1.6 품질제품검사 신청 업체에서 운영 중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전에 구축되어야 한다.			
		품질제품검사 (Ⅱ) (중)	1.7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품목단위별 생산제품검사의 최근 1년간 불합격율(검사로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2.0 % 이하이어야 한다.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은 종전의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일로 한다.			
		품질제품검사 (Ⅲ) (중)	1.8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품목단위별 생산제품검사의 최근 1년간 불합격율(검사로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 % 이하이어야 한다.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을 신청한 경우, 품질제품검사 신청일은 종전의 품질제품검사의 신청일로 한다.			
	나) 조직 및 인력	공통	1.9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책임자 및 부책임자를 지정·운영하고 관련직원의 윤리서약서를 문서화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	1.10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담당직원이 충분한 이해와 숙지상태를 유지하도록 분야별·계층별로 교육훈련을 규정화하고 계획 및 실행결과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1.11 시험·검사 및 합격표시관리 등 중요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직원의 직무기술서 및 직원 이력카드 등 자격인증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공통 (중) (*)	1.12 신제품 평가, 고객 개선요구사항, 부적합 검사결과 개선 등 품질경영시스템 향상을 위한 자체 심의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II) (*)	1.13 재직경력 1년 이상으로 관련 교육(정기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 및 생산업무 전담인력을 갖추고 개인별 책임과 권한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III) (*)	1.14 재직경력 3년 이상으로 관련 교육(정기교육)을 이수한 품질관리, 생산 및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갖추고 조직의 책임과 권한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다) 기록 및 문 서관리	공통	1.15 제조공정 및 시험·검사에 사용되는 규격 등 모든 기술문서는 최신본을 사용하여야 한다.			
		공통 (*)	1.16 품질경영시스템 운영에 따라 생성되는 모든 기록(각종대장, 파일, 서류 등) 및 문서(기술문서, 외부출처문서 등)는 식별, 검색, 보관, 폐기 등의 규정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3년 이상의 보존기간을 설정하여 관리대장에 의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설 계 및 개 발	가) 설계	공통	2.1 생산에 적용되는 제품의 설계기록물을 보존하여야 하며, 작성·승인·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2.2 공정관리계획서, 작업지침서, 공정별 합격기준 등 제조공정 관련 기록물의 작성·승인·변경 등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개발	품질 제품 검사 (III) (중)	2.3 제품의 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고 실증적인 개발 실적이 있어야 한다.			
[3] 구 매 및 생 산	가) 구매	공통	3.1 구매품에 대한 합리적인 검수기준을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외주업체 관리	공통	3.2 제품의 일부를 제조·납품하는 외주업체에 대한 자격 및 품질관리 평가기준, 사후관리 절차를 규정화하고 지정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중)	3.3 품목단위의 제품에는 수입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품질	3.4 중요 외주품 및 공급자를 평가하고 평가에 적합한 외주품을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품 검사 (Ⅱ)			
		품질 제품 검사 (Ⅲ)	3.5 모든 외주품 및 공급자를 평가하고 구매/발주/재고 현황의 전산화 등으로 관리하여 평가에 적합한 외주품을 생산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제조설비 및 장비	공통 (중)	3.6 신청품목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 및 장비를 보유하고 목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통	3.7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의 사용매뉴얼 및 안전수칙을 작성·비치하여 주기적인 교육 등의 개선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공통 (*)	3.8 제조설비 및 장비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의 절차를 규정화 하고 이력 등의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3.9 제조설비 및 장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표시하고 절차를 규정화 하여 정상가동상태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오염물질의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자로 하여금 관리되어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3.10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3.11 중요 제조설비 및 장비를 포함하고 해당 품목단위의 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조시설 및 장비별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을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라) 생산	공통 (중)	3.12 생산공정 합리화를 위한 최신본의 공정관리규정(작업지침서, 작업표준, 작업지도서 등) 및 공정별 합격 판정기준을 규정화하여야 한다.		
		공통	3.13 생산설비, 생산품 및 불량품에 대한 식별 표시를 명확히 하고 정상제품과 불량제품을 격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통	3.14 특수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작업 또는 공정은 경력 및 자격이 부여된 작업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공통 (*)	3.15 부속품 및 완성품의 효과적인 보관·보존·재고관리를 위한 관리기준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공통 (중)	3.16 완성품의 생산 및 판매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은 합격증지 불출현황 또는 철인사용 현황 기록과 일치하여야 한다.		
		품질	3.17 주요공정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상의 문제점 및 조		

		제품 검사 (Ⅱ)	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3.18 모든 공정별 중간검사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종합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상의 문제점 및 조치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자 체 검 사 체 계	가) 검사방법 및 합격수준관리	공통 (중)	4.1 샘플링·검사방법 및 합격수준 등을 규정화하고 자체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시험·검사결과 등 증거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공통 (중) (*)	4.2 합격제품의 출고를 승인하는 책임자를 선정하여 승인이 확인된 경우에 제품을 출고하여야 한다.			
		공통	4.3 시험·검사제품의 취급·운반·보관 및 부적합·불량제품에 대하여 원인파악 등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중)	4.4 시험·검사자를 지정하여 생산로트마다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중)	4.5 형식별로 년 1회 이상 관련 기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자체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관련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4.6 시험실별 환경유지를 위한 온도 및 습도조건을 규정화 하고 시험실 환경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공통	4.7 시험의 일부를 외부시험기관에 의뢰하거나 시험기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활용하는 경우의 신청 및 처리절차를 규정화하고 평가등의 선정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4.8 중요 제조공정 단계별로 제품적합성 검사절차를 규정화하고, 불량품의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조치 및 품질개선활동의 증거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Ⅲ)	4.9 모든 제조공정 단계별로 제품적합성 검사절차를 규정화하여 운영하고, 불량품의 원인분석을 통한 재발방지조치 및 품질개선활동의 증거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나) 검사설비 및 장비	공통 (중)	4.10 교정 및 중간점검 등을 통해 측정의 유효성과 지속적인 장비의 가동·유지·관리상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공통	4.11 주요 시험·검사장비의 사용매뉴얼 등 사용기준을 작성하여 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공통	4.12 기기의 구입, 사용, 점검, 수리, 폐기 등			

		(*)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기기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4.13 주요 검사설비 및 장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운영 등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II) 품질 제품 검사	4.14 주요 검사설비 및 장비를 포함하고 해당 품목단위의 제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사설비 및 장비의 점검항목, 점검주기, 점검방법 등 관리절차를 규정화하고 운영 등의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III) 품질 제품 검사	4.15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사설비 및 장비의 확충계획을 수립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II) (*)				
		품질 제품 검사	4.16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검사설비 및 장비의 중장기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1년 이상 실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5]	가) 시정 및 예 방조치	공통	5.1 생산공정 및 검사결과의 불량원인 개선과 내부심사, 경영검토 부적합 내용 등의 개선을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절차를 규정화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공통	5.2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서에는 발견되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부적합 사항, 조치요구기한 및 조치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한다.			
		공통	5.3 시정 및 예방조치 결과보고서에는 부적합 원인 분석, 개선결과, 잠재적 원인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내부심 사	공통	5.4 년 1회 이상의 정기내부심사를 실시하고, 품목단위 추가 또는 조직의 변동 등 품질경영시스템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특별내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통	5.5 내부심사는 피심사 부서와 독립적인 위치로서 자격을 부여 받은 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관련 규정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공통	5.6 내부심사를 위한 계획수립, 실행(심사내용), 결과보고의 방법과 절차는 규정화되어야 하며, 관련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5.7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심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6]	다) 경영검토	(Ⅱ) (*)			
		품질 제품 검사 (Ⅲ) (*)	5.8 품질경영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내부심사자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전담조직을 갖추어 책임과 권한을 규정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공통 (*)	5.9 경영검토 회의 내용에는 품질방침의 이행, 내부심사결과, 시정 및 예방조치결과, 고객불만사항, 중요작업의 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	5.10 품질경영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경영검토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화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합격표시	품질 제품 검사 (Ⅲ) (*)	5.11 품질경영시스템의 향상을 위한 경영검토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화하고 년 2회 이상 대표자가 주관하는 정기적인 경영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통 (중)	6.1 합격표시의 관리(수령, 불출, 사용, 보관 및 반납, 오사용, 훼손, 도난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화하고, 대표자가 지정된 직원에 의해 관련기록을 작성 및 보존하여야 하며, 이러한 기록에서 관리책임자의 서명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통 (*)	6.2 합격표시 관리자는 합격표시 부착작업 공정에 입회하여야 하며, 주 1회 이상 합격표시 관리상태를 점검 및 확인하여야 한다.		
합격표시 등의 관리	나) 품질안정성	공통 (중)	6.3 합격표시는 분실 및 손상을 방지할 수 있는 2중의 시건장치가 된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 외의 불출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공통 (중)	6.4 생산중 제품의 결함 또는 A/S에서 발견된 부적합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는 기록으로 보존되어 품질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공통	6.5 고객 및 직원의 불만 접수사항에 대한 현황 관리, 분석결과, 예방대책 강구, 조치결과 의 회신 및 추적관리 실적 등 관련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품질 제품 검사 (Ⅱ)	6.6 제품별 결함,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안별 조치계획이 규정화되어 관리하여야 한다.		
		품질	6.7 제품별 결함, 제품불량사고 및 부적합품 유통방지를 위한 사안별 조치계획이 규정화되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품 검사 (Ⅲ)	통방지를 위한 사안별 조치계획 및 대응매뉴얼이 규정화되어 정기적인 분석을 통해 품질 및 제품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 심사종류의 「공통」은 품질제품검사(Ⅱ) 및 품질제품검사(Ⅲ)의 공통된 심사항목이고, 「품질제품검사(Ⅱ)」은 품질제품검사(Ⅱ)의 공정심사 항목이며, 「품질제품검사(Ⅲ)」는 품질제품검사(Ⅲ)의 공정심사 항목임. ※ (중)표시의 심사항목은 심사결과 1개 이상의 부적합 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결과는 부적합 처리됨. ※ (*)표시의 심사항목은 이미 품질제품검사를 적용받고 있는 신청인이 다른 품목단위의 소방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는 심사항목임. ※ 규칙 제30조에 따라 우수품질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품질제품검사(Ⅱ)」과 「공통」에 해당하는 심사항목<신설 2015.1.15.>					

제 호

품질제품검사 적용승인서

신청인 성 명:

상 호:

사업장주소: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7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소방용품에 품질제품검사 적용을 승인합니다.

1. 품목단위명 :

2. 적용검사주기 :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Ⅲ)

3. 승인구분 : ☐ 형식승인, ☐ 성능인증

4. 비 고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인

품질제품검사가 적용되는 소방용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순번	승인(인증)번호	적용일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변경신청서

품질제품검사 적용현황	품목단위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Ⅲ)
	승인구분		[] 형식승인 [] 성능인증
	품질제품검사 적용 승인일		
변경하고자 하는 품질제품검사 구분	품목단위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	적용구분 변경㉓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Ⅲ)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Ⅲ)
		적용구분 변경㉔	[] 품질제품검사(Ⅱ)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Ⅲ) → 품질제품검사(Ⅰ) [] 품질제품검사(Ⅲ) → 품질제품검사(Ⅱ)
	승인구분		[] 형식승인 [] 성능인증
※비고 : 품질제품검사 적용구분을 “적용구분변경㉔” 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제7조의 공정심사는 적합한 것으로 본다.			